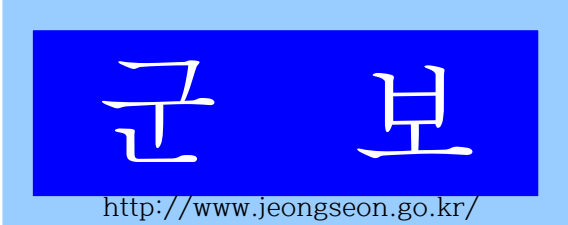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62호 2024. 5. 22.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4-537호 정선 군계획시설사업(종합운동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1
- 정선군 공고 제2024-566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업(소로3-35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3
- 정선군 공고 제2024-579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5
- 정선군 공고 제2024-58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19
- 정선군 공고 제2024-587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26
- 정선군 공고 제2024-591호 삼탄아트마인 미디어아트 기획 및 조성용역 제안서 평가 위원(후보자) 모집 공고.....57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4-537호

정선 군계획시설사업(종합운동장)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강원도 고시 제2008-218호(2008. 8. 8.)로 최초 결정 고시되어, 정선군 고시 제2024-24호(2024. 4. 19.)호로 변경 결정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체육시설:종합운동장)에 대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0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768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체육시설 : 종합운동장)
- 2) 명 칭 : 정선 종합운동장 내 실내골프연습장 건립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 A=177,698.4㎡	□ 실내골프연습장 증축 A=413㎡ - 건축면적 : 176.44㎡ - 연 면 적 : 343.32㎡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문화체육과장)

2)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4. 12. 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4. 5. 10. ~ 5. 24.)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033-560-213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토지조서

연 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성 명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의 종 류 및 내 容
1	정선읍 애산리	768	체	177,698.4	177,698.4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			
계				177,698.4	177,698.4					

정선군 공고 제2024-566호

정선(정선) 군계획시설사업(소로3-35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1. 정선군 고시 제2010-96호(2010. 7. 9.)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정선) 군계획시설(도로:소로3-35호선)에 대한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 2.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시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7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2-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군계획시설사업(도로 : 소로3-35호선)
- 2) 명 칭 : 백두대간문화철도역 연계협력사업(정선5일장 아리랑로)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 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규 모	금회시행	
교통시설 (도로)	소로3-35	□ L=127m, B=6m(A=799m ²)	□ 도로개설 A=167m ² - L=35m, B=4~6m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관광과장)
- 2)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5. 12. 31.

바. 공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2024. 5. 17. ~ 5. 31.)

사. 공람장소 : 정선군 도시과(033-560-213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

자.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토지조서

연 번	위 치	지 번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공 부	편 입	주 소	성 명	관 계 인	성 명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의 종 류 및 내 용
1	정선읍 봉양리	2-2	제	6,052	12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 군			
2	정선읍 봉양리	1-173	잡	136	92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김○ 순			
3	정선읍 봉양리	1-174	잡	20	14	정선군 정선읍 녹송8길	이○ 민			
4	정선읍 봉양리	1-170	잡	61	44	정선군 정선읍 녹송8길	이○ 민			
5	정선읍 봉양리	1-109	도	536	5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 군			
계				6,805	167					

정선군 공고 제2024-579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농업분야 효율적인 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부서 간 업무 조정 사항 반영
- 나. 직렬 불부합 조정

2. 주요내용

- 가. 신동읍장 직급 조정(안 제15조)
 - 행정·농업·시설·사회복지사무관 ⇒ 행정·농업·시설·공업사무관
- 나. 분장사무 조정 : [별표]
 - 시설국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컨설팅 외 14개 업무 이관 ⇒ 농업기술센터
 - 유사 중복 사무 수정 및 신규사업 신설

부서명	분장사무	조정사항
시설국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컨설팅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관리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관광농원 및 민박시설지원·관리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생산자 단체 관리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귀농·귀촌지원사업 및 교육지도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도시농업 육성 및 관리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농촌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삭제

부 서 명	분장사무	조정사항
시설국 농업정책과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산업기능요원 운영 및 관리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농촌체험마을 지원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관리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농촌체험프로그램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재해대책(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복구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및 관리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관광농원 조성 및 운영관리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농어촌민박 운영관리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후계농업인 선발 및 육성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상담 및 교육지도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도시농업 육성 및 지도	삭제
시설국 농업정책과	농업경영컨설팅	삭제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컨설팅	이관
농업기술센터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관리	이관
농업기술센터	관광농원 및 민박시설지원·관리	이관
농업기술센터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생산자 단체 관리	이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사업 및 교육지도	이관
농업기술센터	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관
농업기술센터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이관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 육성 및 관리	이관
농업기술센터	농촌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이관
농업기술센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이관
농업기술센터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이관
농업기술센터	산업기능요원 운영 및 관리	이관

부 서 명	분장사무	조정사항
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마을 지원	이관
농업기술센터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관리	이관
농업기술센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이관
농업기술센터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관련 업무	신설
농업기술센터	정선군 농업회의소 관리위탁운영지원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7일(1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4. 첨부서류

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라. 관계법령 1부.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miran6971@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고한읍장·사북읍장·신동읍장·여량면장·북평면장”을 “고한읍장·사북읍장·여량면장·북평면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신동읍장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별표1, 별표2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본청 업무분장표(제6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기획관		(생략)
총무행정관		(생략)
행정국장		(생략)
회계과		(생략)
세무과		(생략)
민원과		(생략)
가족행복과		(생략)
복지과		(생략)
경제과		(생략)
안전과		(생략)
시설국장		(생략)
관광과		(생략)
문화체육과		(생략)
전략산업과		(생략)
농업정책과	1	농업·농촌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농정시책개발 및 통합조정
	3	농촌활력증진 및 농업인 복지향상통합 조정
	4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
	5	농촌 융복합산업화, 자원복합 산업화 추진
	6	농촌협약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만들기) 육성 및 시행
	7	기업형 새농촌 육성
	8	농업인 수당 지원
	9	농업인 건강, 연금보험료 관리
	10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관리·운영
	11	농업경영컨설팅 (이관)
	12	사회적 농업 활성화
	13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관리 (이관)
	14	농촌체험프로그램 (유사 삭제)
	15	관광농원 및 민박시설지원·관리 (이관)
	16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생산자 단체 관리 (이관)

17	귀농·귀촌지원사업 및 교육지도 (이관)
18	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관)
19	농업재해보험(농업인, 농작물, 농기계)및 농업재해 지원
20	차량, 공유재산 관리
21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이관)
22	농어촌진흥기금관리
23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관리
24	재해대책(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25	국·공유재산 관리 등
26	농업생산기반시설 계획 및 수립
27	밭기반 정비
28	지표수 관리
29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
30	농경지 배수로 관리
31	수리시설 관리
32	재해대책(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복구 (유사 삭제)
33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사후관리
34	농업생산기반시설 점검 및 관리 (유사 삭제)
35	개간지 인허가
36	문화마을, 휴양단지 관리
37	농업진흥지역 관리
38	농지관리 업무관리
39	친환경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
40	식량작물 재배, 생산지원
41	농산물 산업기반구축사업
42	농가경영비 절감(농자재 반값) 영농자재 지원사업
43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44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45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46	양정(양곡관리, 벼수매, 도정공장, 창고)업무
47	농업재해(조사지원 및 예방사업)
48	벼재배사업(상토, 병충해육묘시설, 운반기, 곡물건조기 지원 등)
49	인허가·불법 관리(비료, 퇴비, 농약, 종자, 육묘)

	50	식량작물 통계
	51	농촌일손돕기
	52	잡곡기반조성사업(두류, 잡곡, 메밀 등)
	53	공익직불제
	54	친환경농업직불제, 무농약 지속직불제, FTA피해보전(식량분야)
	55	경관보전 직불제, 논이모작 직불제
	56	친환경농업지원(자율실천단지, 친환경농자재, 친환경 포장재, 친환경 인증 촉진비)
	57	유기농업자재 지원, 녹비작물 지원
	58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5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 지원
	60	처분농지 관리 및 농지의 이용증진업무
	61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약제 지원에 관한 사항
	62	면세유 지원에 관한 사항
	63	원예 특용작물(채소 시설원예) 지원
	64	시설원예 환경개선 및 현대화지원
	65	원예용 소형관정, 에너지이용 효율화
	66	스마트팜 ITC융복합 확산 사업
	67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68	농기계 고도화, 현대화 촉진지원
	69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사업
	70	고랭지 농산물 육성
	71	특산작물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2	과수, 원예분야 생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3	원예특작 FTA피해지원
	74	감자 산업 육성
	75	채소수급안정 사업
	76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77	특작작물생산시설 현대화
	78	곤충산업
	79	도시농업 육성 및 관리(이관)
	80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81	농촌인력 중계센터 운영
	82	농촌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이관)

	83	농번기 중식 지원사업
	84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이관)
	85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이관)
	86	산업기능요원 운영 및 관리 (이관)
	87	농촌체험마을 지원 (이관)
	88	관광농원 조성 및 운영관리 (유사 삭제)
	89	농이촌민박 운영관리 (유사 삭제)
	90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관리 (이관)
	91	후계농업인 선발 및 육성 (유사 삭제)
	92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이관)
	93	귀농·귀촌 상담 및 교육지도 (유사 삭제)
	94	도시농업 육성 및 지도 (유사 삭제)
	95	과수 경쟁력 재고사업
	96	과수 FTA피해지원
	97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98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99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
	100	명품과원조성 사업
	101	과실류 행정조사 등 과수통계 작성
	102	과일산업대전 참여
	103	농업경영컨설팅 (유사 삭제)
유통축산과		(생략)
환경과		(생략)
산림과		(생략)
건설과		(생략)
도시과		(생략)

[별표2]

농업기술센터 업무분장표(제8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기술지원과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조정·/예산총괄
	2	농촌지도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3	농업기술 공보 및 홍보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농업정보화 업무
	6	농촌지도자회 육성·지도
	7	농촌지도분야 시범사업 추진
	8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관리 및 운영
	9	청사(소방, 전기 등) 및 공용차량 관리
	10	공무직(기간제) 복무관리
	11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2	4-H 회 육성·지도
	13	농민회 사업 지원 및 관리
	14	생활개선회 육성·지도
	15	강소농 육성 지원
	16	농업인 전문교육
	17	농촌생활환경 개선
	18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19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도
	20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지도
	21	농업인 실용교육(명칭변경)
	22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육성·지도
	23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4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지원
	25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생 선발 및 업무지원
	26	농촌여성 역량강화 지원
	27	농업인 대학 운영
	28	농업인 정보화교육
	29	농업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30	농업인 회관 운영·관리

	31	농업인경영상담실, 농업도서실 운영관리
	32	농산물 소득 조사 및 분석
	33	농업기계 임대사업
	34	농업기계 훈련 및 순회기술교육지원
	35	농업기계 영농지원단 운영
	36	임대 농업기계 유지·관리
	37	농업기계 영농지원 프로그램 운영
	38	농업인 상담소 운영 및 관리
	39	임대사업(분소) 운영 및 관리
	40	농업경영컨설팅 (추가)
	41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관리 (추가)
	42	관광농원 및 민박시설지원·관리 (추가)
	43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생산자 단체 관리 (추가)
	44	귀농·귀촌지원사업 및 교육지도 (추가)
	45	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추가)
	46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추가)
	47	도시농업 육성 및 관리 (추가)
	48	농촌여성농업인 지원사업 (추가)
	49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 (추가)
	50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추가)
	51	산업기능요원 운영 및 관리 (추가)
	52	농촌체험마을 지원 (추가)
	53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관리 (추가)
	54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추가)
	55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관련 업무 (추가)
	56	정선군 농업회의소 관리위탁운영지원 (추가)
기술연구과		(생략)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면장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p> <p>1. (생략)</p> <p>2. <u>고한읍장·사북읍장·신동읍장·여량면장·북평면장</u>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p> <p><u><신 설></u></p> <p>3.·4. (생략)</p>	<p>제15조(직급)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고한읍장·사북읍장·여량면장·북평면장</u> ----- ----- -----</p> <p>3. <u>신동읍장</u> :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p> <p>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정원 및 기존 사무분장의 조정·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총무행정담당관 황 승 훈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생략)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①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4-580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균형인사 및 군정 주요 현안 능동적 대처를 위한 담당 직렬 등을 복수 정원 조정하여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나.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른 쇠퇴분야의 인력 감축을 신규·핵심분야에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원 총수 : 670명 ※ 총 정원 변동없음
- 나.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

(단위:명)

구 분	계	본 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기 준	670	341	16	108	29	176
조 정	670	342	16	108	28	176
증 감	-	+1		-	△1	

다.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 내역

(담당 직렬 조정)

-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담당 : 지방행정·시설주사
⇒ 지방행정·시설·토목운영·사무운영주사
- 교통관리사업소 공영버스운영담당 : 지방행정주사 ⇒ 지방행정·기계운영주사

- 북평면 민원담당 : 지방행정·농업주사 ⇒ 지방행정·전산주사

(부서별 인력 재배치)

-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 1명
 - 시설국 농업정책과(농촌협약) 증원 1명 (지방시설주사보)
- 행정수요 감소 및 위탁 추진에 따른 정원 감원 1명
 - 상하수도사업소 감원 1명 (지방시설서기)

(복수정원 조정)

- 안전과 지방행정서기 ⇒ 안전과 지방행정방재안전서기
- 교통관리사업소 지방환경방재안전서기 ⇒ 교통관리사업소 지방환경시설서기

(직렬 불부합 조정)

- 신동읍 지방행정·농업·사회복지·시설사무관 ⇒ 신동읍 지방행정·농업·공업·시설사무관
- 남면 지방기계운영주사보 ⇒ 남면 지방토목운영주사보

(소수 직렬 여유정원 조정)

- 보건소 지방보건서기보 ⇒ 보건소 지방보건·간호서기
- 보건소 지방보건서기보 ⇒ 보건소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보
- 보건소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서기 ⇒ 보건소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 정선읍 지방운전서기 ⇒ 정선읍 지방운전주사보
- 임계면 지방운전서기 ⇒ 임계면 지방운전주사보
- 보건소 지방운전서기보 ⇒ 보건소 지방운전주사보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27일(1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4. 첨부서류

- 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나.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다. 관계법령 1부.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miran6971@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정원 증원 없이 정원 내 조정으로 별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총무행정담당관 황 승 훈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3.(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정선군 공고 제2024-587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에 따라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임용시험 관련 각종 기준 등을 정비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공무원 임용절차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추가(안 제6조)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에 따라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 양육자’ 추가
- 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8)
 -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응시 자격기준 개선
 - ‘고등학교·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졸업자 등)’로 수정
- 민간근무 경력자(과장급 이상) 임용 시, 응시요건 개선(안 별표 8)
 -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근무 경력은,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요구되어야 하나, 조문 문구 불분명하여 민간 경력으로 응시한 경우에만 법인, 단체 등에서의 관리자 경력을 요구하도록 명확화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6월 9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miran6971@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 치 법 규 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응시수수료) ①·② (생 략)</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6조(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 음)</p> <p>③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u></p>

[별표 8]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시임기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지 제1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수입증지 붙이는 곳



※응시번호		응 시 표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군	인	인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 터	까 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 터	까 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⑪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희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 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 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 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정선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정선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총무행정담당관 황 승 훈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참고안

제6조의2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10.><단서신설 2004.10.13.>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1995.7.4., 2013.12.1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2016.12.30. 2020.9.22. 2021.10.20., 2023.8.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별표 5의3] <신설 2013.12.10.>, <개정 2014.3.15., 2015.12.21., 2018.4.12. 2021.10.20., 2024.1.2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 등급	자격기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6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7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8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호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급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호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9호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 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 간 선 택 제 임 기 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라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
	마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한 시 임 기 제	5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8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
	9호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 졸업자등

※ 비고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 "졸업자등"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표준안)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별표 5의4] <신설 2016.12.30.>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4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전문임기제	가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5.3.2., 2009.3.5., 2018.12.21., 2020.9.22., 2021.10.20., 2023.8.1., 2024.1.25.>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장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장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④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③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 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글)		② 희망지역		※ 등록심사	
	(한문)		제1지역	시군	사진대조	서류심사
	(영문)		제2지역	시군	㉠	㉠
④ 주 소					(사진부착)	
⑤ 연 락 처	전화번호 :					
	휴 대 폰 :					
⑥ 병 역	○ 병역필 / ○ 면제 / ○ 미필 / ○ 여성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⑧ 자 격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㉑ 비상연락처

관계	성 명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주민등록부 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4)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5)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8)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공무원으로 재직했던 경우에 한함)
 - (9)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19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회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③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④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
- ⑤ 연 락 처 ... 본인에게 직접 연락이 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
- ⑥ 병 역 관 계 ... 남성인 경우 ‘병역필’, ‘면제’, ‘미필’ 중 체크(√),
여성인 경우 ‘여성’ 체크(√)
* 남성인 경우 군 복무 중인 경우 ‘미필’에 체크(√)
* 여성인 경우 군 복무 중 또는 군 복무를 마쳤더라도 ‘여성’에 체크(√)
- ⑦ 학 력 ... 중학교 이상 학력만 기재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년수를 기재
- ⑧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재
- ⑨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재
- ⑩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재
- ⑪ 비 상 연 락 처 ...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

정선군 공고 제2024-591호

삼탄아트마인 미디어아트 기획 및 조성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

「삼탄아트마인 미디어아트 기획 및 조성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
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정 선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삼탄아트마인 미디어아트 기획 및 조성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설계 및 제작·설치기간 포함)
- 사업내용 : 광산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미디어아트 조성
권양기 및 레일바이뮤지엄 야간 미디어아트 공간 조성 등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평가위원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4. 5. 21. ~ 5. 23.(3일간)
- 모집인원 : 40명(평가위원 수의 3배수)
- 모집분야 : 미디어콘텐츠(영상제작), 정보통신(ICT), 전시관 운영, 관광

구 분	모집분야 (명)				합계(명)
	미디어콘텐츠 (영상제작)	정보통신 (ICT)	전시관 운영	관광	
평가위원후보	12	12	8	8	40
평가위원	3	3	2	2	10

□ 자격조건

-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6급이상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한 수준이상의 경력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
-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 국·공립 전시관·과학관·미술관에 근무중인 학예사 또는 관리 운영 담당자

□ 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대상

-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서 접수 후, 입찰참가 등록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예비명단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 평가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음

3 신청서 접수 및 평가위원 선정

1.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5. 21. ~ 5. 23. 16:00까지(3일간)

□ 접수방법 : 이메일(우편, 팩스, 방문 접수 불가)

- E-Mail : ahnahn1663@korea.kr (☎ 033-560-2145)

※ 서류상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 불가능하오니(별도 통보없음), 반드시 모집분야, 응모자격, 제출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서식 1】
-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서식 2】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서식 3】
- 자격증명서류(최종학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일체

2. 평가위원 선정

- 통보일시 : 2024. 5. 24.(금)
- 선정인원 : 평가위원 10명
- 선정방법 : 입찰참가자 평가위원 수만큼 분야별로 추첨을 통해 선정
(다빈도 수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
- 선정통보 : 유선 개별 연락
(연락 불능, 불참 시 차순위 섭외)

3. 평가위원회 개최일정

- 일 시 : 2024. 5. 28.(화)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 시 평가위원 개별 통보
- 장 소 : 정선군청 소회의실 14:00
- 내 용 : 제안설명(업체별 PPT 설명, 질의응답) 및 평가

4. 기타사항

-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내주신 자료는 「삼탄아트마인 미디어아트 기획 및 조성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작성에만 활용됩니다.
- 신청서에 e-mail 주소와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기 바라며,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세부기준」 제15조제1항 및 제4항 관련 [별표 17] 의거 당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에 대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 후보자로 등록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알리지 마시고 보안을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타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사항은 정선군청 관광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33-560-2145)

【서식 1】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전문분야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직장	직 장 명		직위(직급)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학력사항	취득연월	학 교	학 위	전 공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주요업무	
자격증 보유현황	취득연월	자격증명	인가·관리기관	비 고	
저서 및 논문					
그 밖의 사항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기타 응모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요건 및 관련분야에 해당하는 증명서 반드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위와 같이 「정선군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4 . 5. .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서식 2】

평가위원 (보안)각서

성 명 :
주 소 :

본인은 정선군청 제안서평가위원회(예비)위원으로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책임을 지며, 위원자격이 박탈되어도 이의 없음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다 음

- 1. 본인은 정선군청 제안서평가위원회(예비)위원임을 대외에 알리지 않는다.
- 2. 본인은 제안서 평가 전에 해당 평가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평가에 회피한다.
 - 가.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 나.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3. 본인은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미리 배부할 경우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한다.
- 4. 평가 중인 때에는 사업자와 개별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며, 평가 후에도 심의과정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안서평가위원 성명 : 2024. 5.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서식 3】

개 인 정 보 이 용 동 의 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제안서 평가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정선군(관광과)
- 이용 목적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정보 이용
-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제안서 평가 완료일 까지
- 고유식별 및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2024. 5. .

성명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